

2026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및 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수한 의약품 개발 보급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제약기업(단체) 및 국내 제약산업 종사자(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1. 포상규모 및 부문

- (포상명) ▲ (단체) 혁신형 제약기업 장관표창, ▲ (개인) 제약산업 발전 장관표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 (훈격/규모) 총 21점 내외,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최대 16점),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최대 5점)

포상명	포상 부문	추천 대상	비고
혁신형 제약기업	최근 성과가 우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중 의약품 연구개발·보급 등의 성과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6점 이내
제약산업 발전*	① 연구개발 우수 ② 해외수출 우수 ③ 사회적기여(ESG 등) 우수 ④ 공급망 안정 우수 ⑤ 산업진흥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며, 각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15점 이내 (진흥원 표창 포함)

* 적격자가 없는 경우 부문 상관없이 포상, 장관표창 대상자 결정 후 차순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수여 가능

2. 후보자 자격요건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 (재포상 금지) ▲ (개인)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표창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함

- ('포상 추천일'의 정의) 각 추천기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이 보건복지부(표창 담당부서)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한 날
- (재포상 금지 판단 기준) 직전 표창수여일부터 '포상 추천일'까지의 기간
(예) 2025. 11. 1. 장관급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A에 대해 2026. 9. 1. 추천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A는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하여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단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포상 추천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기업
 - 신약 연구개발, 의약품 해외수출, 해외 기술이전 등 제약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업
-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표창 수여일부터 포상 추천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개인) 포상 추천일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기업·기관·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연구개발, 해외수출, 사회적 기여, 의약품 공급망 안정 또는 산업진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매우 높은 자

※ (개인) 부문별 자격요건

부문	공적 사항
① 연구 개발	신약·개량신약·바이오시밀러 등의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임상시험, 품목허가, 생산공정·플랫폼 기술 개발 등을 주도하여 의약품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 ※ (주요선발기준) 후보자의 역할·주도성 및 기여도, 신약개발·임상·허가·기술이전 등 성과의 중요성·완성도, 기술적 난관 극복 정도, 국민건강 및 국가 기술경쟁력 향상 효과, 공적기간
② 해외 수출	의약품 해외수출, 해외 품목 출시, 신규시장 개척·확대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수출 증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주요선발기준) 후보자의 역할·주도성 및 기여도, 제품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 성과의 중요성·규모·우수성, 해외 규제·협상·시장진입 장벽 극복 정도, 국가 수출경쟁력 및 해외 고객(거래처 등) 만족도 제고 효과, 공적기간
③ 사회적 기여	ESG 경영, 환경부담 감축, 의약품 접근성 제고, 환자·취약계층 지원, 사회공헌, 안전·윤리경영 및 상생협력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생활 향상과 제약바이오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한 자 ※ (주요선발기준) 후보자의 역할·주도성 및 기여도, ESG 경영·환경부담 감축·환자지원·상생협력 등 성과의 실효성·지속성, 사회문제 해결과 이해관계자 조정의 난이도, 국민생활 및 수혜자 만족도 향상 효과, 공적기간
④ 공급망 안정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수급불안정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수입·공급, 공급처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재고·물류 관리 및 공급위기 대응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공백 방지와 국가 공급망 강화에 기여한 자 ※ (주요선발기준) 후보자의 역할·주도성 및 기여도, 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공급중단 방지·국산화·공급처 다변화 등 성과의 중요성·우수성, 공급위기 극복 정도, 국가 보건안보 및 의약품 접근성 향상 효과, 공적기간
⑤ 산업 진흥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정책개발, 제도·규제 개선, 산업 조사·연구,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관 협력, 국제협력 및 산업기반·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 (주요선발기준) 후보자의 역할·주도성 및 기여도, 정책·제도·규제 개선, 기업지원·인력양성 및 산업생태계 조성 성과의 중요성·파급효과, 이해관계자 조정과 제도개선의 난이도, 산업경쟁력 및 수혜자 만족도 향상 효과, 공적기간

3. 후보자 추천 및 접수 계획

□ 추천권자 및 추천 대상자

- (추천권자) ▲ (단체)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협회·단체 또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병원·대학·연구소 등) 등,
▲ (개인) 추천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단체 또는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협회·단체 등

※ 추천단체(예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 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등 제약 관련 협회 및 대학, 병원, 연구소 등

○ (추천대상자)

- (단체) 신약 연구개발, 해외수출, 기술이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혁신형 제약기업
- (개인) 연구개발·해외수출·사회적 기여(ESG 등)·의약품 공급망 안정·산업진흥 분야에서 우수한 공적을 쌓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종사자

□ 접수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9월 15일(화) ~ 9월 29일(화) 17:00 限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wh8042@khidi.or.kr)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원본서류 요청 시 서면 제출 필요

- (문의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단 조원택 연구원

* Tel : 043-713-8825, E-Mail : wh8042@khidi.or.kr

□ 제출 서류

○ (제출방법) 후보자별 제출 서류를 ZIP 형식의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제출서류의 ‘포상 후보자 추천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출 서류			서식	비고
공통	1	(추천기관별) 추천 후보자 명단	[서식 1]	추천기관 취합 작성
	2	공적요약서	[서식 2]	추천기관 취합 작성
	3	포상 후보 추천서	[서식 3]	[3-1] 단체, [3-2] 개인
	4	공적조서	[서식 4]	[4-1] 단체, [4-2] 개인
	5	장관표창 동의서(날인필수)	[서식 5]	[5-1] 단체, [5-2] 개인
	5	사업장 조회 양식	[서식 6]	
	6	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7	공적내용 증빙서류 각 1부		증빙 제출 시에만 인정
단체	1	기업별 의약품 매출액연구개발비 및 공적 주요내용	[서식 7]	
개인	1	개인정보동의서(개인)	[서식 8]	
	2	현지확인서(날인필수)	[서식 9]	
	3	신청자 이력서 및 재직/경력 증명서		이력서 자율양식

※ (참고) 개인부문 증빙자료

구분	제출 서류	세부 내용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영업상 민감정보 마스킹 처리 가능	연구개발 우수 부문	연구개발 업무 담당 증빙, 임상시험 승인서, 품목허가 서류, 기술 이전 계약서 등
	해외수출 우수 부문	해외수출 업무 담당 증빙, 수출실적증명서 등
	사회적기여 우수 부문	ESG, 의약품 기부사업 담당 증빙 등
	공급망 안정 우수 부문	공급중단 위기 대응 관련 실적 확인서 등
	사회공헌활동 증빙자료	사회봉사활동, 기부 등
	기타 증빙서류	공적내용과 관련된 기타 증빙자료

4. 심사 일정 및 방식

- (심사기준) 수공기간, 연구결과의 독창성, 우수성, 사업성, 파급효과, 국민건강증진 및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정도 등

표창 구분	심사항목(지표)		점수
혁신형 제약기업 유공 (단체)	■ 공통지표 (40점)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100
	■ 특성지표 (60점)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활동	
제약산업 발전 유공 (개인)	■ 공통지표 (40점)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100
	■ 특성지표 (60점)	당해분야 기여도, 난이도, 업적도, 공적기간	

- (심사 일정)
 - 공적개요서 등 서류 검토 : 9월 5주차
 -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 10월 중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1월 초
 - 수상 대상 확정 : 11월 초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시상식 일정[안]

- (시상식명) 「2026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시상식」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일시/장소) 2026년 11월 25일(예정)/추후 공지
- (참석규모) 수상자 관계자 약 300여명 참석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시 재공지 예정

6. 포상 제외대상자 기준

※ 표창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함

- ('포상 추천일'의 정의) 각 추천기관(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일반국민 등)이 보건복지부(표창 담당부서)에 후보자 추천서류를 제출한 날
- (재포상 금지 판단 기준) 직전 표창수여일부터 '포상 추천일'까지의 기간
(예) 2025. 11. 1. 장관급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A에 대해 2026. 9. 1. 추천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A는 재포상 금지 기간에 해당하여 표창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 재포상 금지기간(표창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기준)

-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포상 추천제한

- 국민 및 단체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수여(예정)일 해당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포상수여(예정)일이 2026년인 경우 : 2023. 1. 1. ~ 포상 추천일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 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확인 내용	확인 대상	확인 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검색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개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보건복지 관련 법령위반)	법인(단체), 대표, 임원 개인(의료인 등)	-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관리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 대표, 임원	-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자격관리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종지사 자격부과팀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 방법

- 산재명단공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범위반사실 조회
<https://case.ftc.go.kr/ocp/co/violLawList.do>)를 통하여 사업장명 검색
-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http://www.moel.go.kr/info/defaultler/list.do>)를 통하여 사업장명, 성명 검색